
문서번호 : 17-03-사무-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전송일자 : 2017. 3. 7.(화)
전송매수 : 총 5매(질의서 3매)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관련된 판사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남용하여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출과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이 사안을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5. 질의서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첨부자료 :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 첨부자료 :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17-03-사무-01

수 신 : 대법원 법원행정처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

전송일자 : 2017. 3. 7.(화)

전송매수 : 총 3 매

1. 법의 지배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활동에 성원을 보냅니다.

2. 최근 언론의 보도로 귀 기관에서 최근 사법부 개혁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법원 내 연구모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지시·개입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모임으로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건입니다.

3. 이에, 우리 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사안의 심각함을 고려하여 본 질의서에 대하여 3월9일(목)까지 귀 기관의 빠른 회신을 바라며, 정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모임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붙임

1. 3월 6일(월) 경향신문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이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법원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실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결과가 언론보도가 크게 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점에 관하여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해명을 구합니다.

2. 3월6일(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예정인 3월25일 학술행사를 축소할 것을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행사의 축소를 ㄱ판사에게 요구하는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할 3월25일 학술행사에 대한 대법원의 지원이 통상적인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타 학술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3월6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은 ㄱ판사에게 장기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산을 위한 기획과 추진을 종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해명을 구합니다.

4. 3월6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 ㄱ판사는 지난 2월20일 법원행정처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부당한 조치에 불응하여 사표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사표는 반려되었으나 2월20일 출근 2시간만에 법원행정처에서 애초 소속이었던 수도권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조치가 이뤄졌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 3월7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애시당초 ㄱ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부임한 바가 없다’고 언론보도와 달리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보도와 해명이 있는바, 지난 2월 20일자로 ㄱ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인사가 난 적이 없었는지, 아울러 ㄱ판사가 발령이 난 직후에 애초에 소속된 수도권 소재 법원으로 인사가 재차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지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